

## [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]

	서류 목록	제출서류
1	신청서	예비·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활용
2	정관	-
3	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	예) 양 당사자간 MOU, 계약서 등
4	각 합작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5	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,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	① 합작참여자 대표 명의의 확인서 -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,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-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② 국내·외 변호사 각 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(직무경력 5년 확인 용도, 현재 재직중인 합작참여 로펌에서 발급받은 것은 반드시 포함)
6	각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의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	양 당사자 명의의 확인서
7	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(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준비)	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 내용 포함
8	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	개별 준비,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
9	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,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	개별 준비,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